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69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김대식·김상훈·김정재

김예지 · 김선교 · 박덕흠

서지영 • 이만희 • 조경태

조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장 등에게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교장이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에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거나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당시 사건 발생 나흘 전에 해당 교사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즉각 분리조치 행위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참극을 막지 못했음.

또한 학교 방학기간 중에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 교장의 임무에 학교시설의 안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학교시설의 안전 책임을 교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추가하고, 교 감의 교장 직무 대행 시 업무에도 이를 추가함(안 제20조).
- 나. 학교의 장은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조치 후 학교의 장은 그 결과를 임명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 신설등).
-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방학기간을 포함한 등·하교의 안 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2조제1항제13호 신설).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민원처리를"을 "민원처리 및 학교시설의 안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무를"을 "교무, 민원처리 및 학교시설의 안 전을"로 한다.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 제목 중 "학생생활지도"를 "학생생활지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학생생활지도에"를 "학생생활지도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폭력행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7조의3에 따른 교내분 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과 교원 또는 교원과 학생을 분리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조치 결과를 임명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5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20조의2제3항에"를 "제20조의2제4항에"로 한다.

-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3(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는 교원 간 또는 교원 과 학생 간의 분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내분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그 밖에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등 · 하교 안전에 관한 사항(방학기간을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민원처리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	및 학교시설의 안전을
· 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u>.</u>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	②
<u>무를</u>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	민원처리 및 학교시설의 안전
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으=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	
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	
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u>학생생활지도</u>) ① (생 략)	<u>학생생활지도 등</u>)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학교의 장은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폭력행위 등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 항에 따른 <u>학생생활지도에</u> 필 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 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③</u> (생 략)

- ④ 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 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 청할 수 있다.
- ⑤ 교원은 <u>제3항에</u>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7조의3에		
따른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교원과 교원 또는		
교원과 학생을 분리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의 장은 조치 결과를 임명권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③</u>		
<u>학생생활지도 및</u>		
제2항에 따른 조치에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에		
<u>⑥</u> <u>제4항에</u>		

-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제3항의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후속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5(「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다음 각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신 설>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3. (생 략)

<u><신 설></u>

<u>⑦</u> <u>제4항의</u>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5(「아동복지법」의 적
용 배제)
<u>.</u>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
의 장의 조치
 <u>3</u> . <u>제20</u> 조의2제4항에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7조의3(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는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분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내분쟁심의
위원회를 둔다.

제32조(기능) ① (생 략) 1. ~ 12. (생 략) <u><신 설></u>

<u>13</u>. · <u>14</u>. (생 략)

③ (생략)

 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12. (현행과 같음)

 13. 등・하교 안전에 관한 사항

 (방학기간을 포함한다)

 14.・15. (현행 제13호 및 제14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